

조기취업자 학점 인정 주요사항

1. 관련 근거

- 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8238(2016.9.26)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미출석 취업자 학점부여 관련 학사운영 안내」
- 나. 학칙 제26조의 2(학점인정) 제7항, 제28조의 3(출석인정), 제29조(평가) 제5항
- 다. 학사운영규정 제35조(출석인정) 제6호
- 라. 조기취업자 학점인정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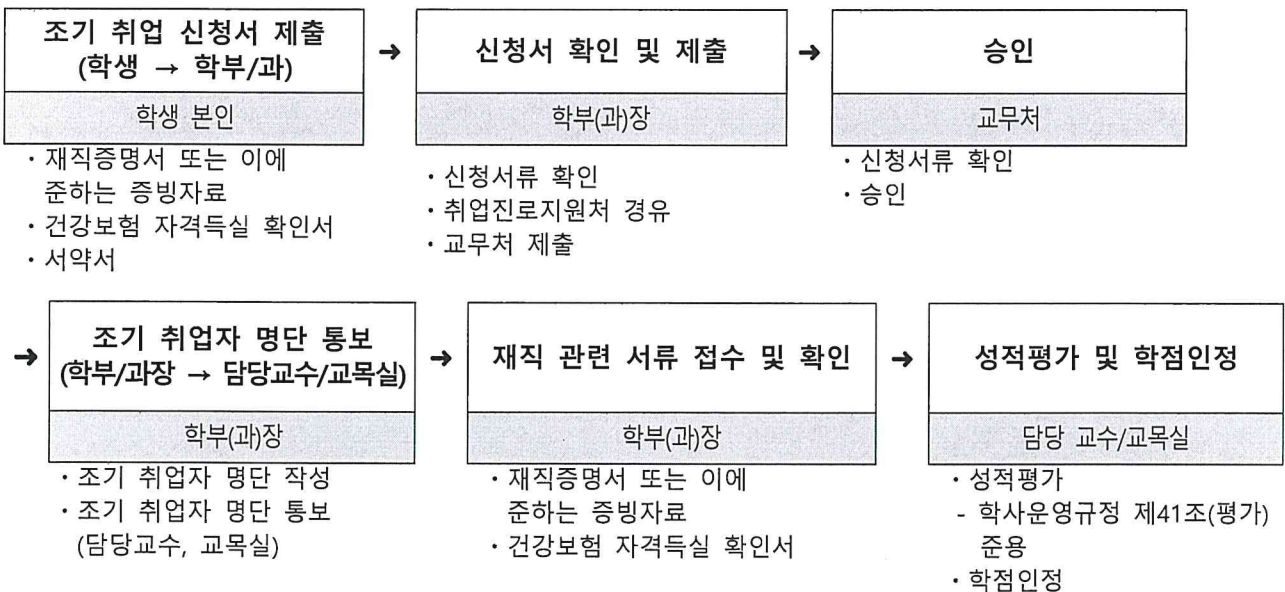
2. 신청 대상 : 국내·외 기관 및 산업체 등에 취업한 자 중 아래의 해당하는 자

- 가. 졸업학년도 최종학기 등록을 마친 자
- 나. 졸업학점 미달로 졸업이 유보된 자
- ※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재학생은 제외

3. 출석 및 학점인정

- 가. 출석 인정기간 : 취업 개시일부터
- 나. 학점인정 : 교과목별 담당교수는 수강신청한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 명시한 평가기준에 따라 과제와 시험 모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근무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과제로 대체할 수 있음

4. 신청 · 승인 · 평가 절차



※ 조기취업 신청서는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가능

※ 조기취업자가 중도 퇴직시에는 “조기취업자 복귀신청서”를 소속학부(과)로 제출하고, 본교에 복귀하여 수업을 받아야 함

조기 취업 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출력)

학부(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e-mail		
연락처	집			취 업 산업체	산업체명			
	휴대폰				근무부서			
	회사전화				소 재 지			
					취 업 일	년 월 일		
공결 교과목	과 목 명		이수구분	학점	담당교수	확인(서명)	비고	
본인은 「조기취업자 학점인정규칙」에 의거 조기취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취업 산업체의 전공 적합성 평가								
취업대상자 본인 상담 및 확인 결과 위 산업체가 학부(과)에서 인정하는 전공과 연관있는 자격과 조건을 갖춘 적합한 산업체임을 확인합니다.								
담당교수 (서명)				학부(과)장 (서명)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증빙자료 1부.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서약서 1부.							
확인	담당교수	학부(과)장	취업진로 지원처장	교무처 결재	담 당	팀 장	부 처 장	처 장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서 약 서

학부(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휴대폰	

상기 본인은 조기 취업 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으로서 성실한 자세로 맡은바 임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약속하며, 불미스런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또한 취업관계가 종료(퇴사)될 경우에는 발생 즉시 학교로 복귀하여 학생 신분으로서 수업에 충실히 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조기 취업자 복귀 신청서

학부(과)			학 년			학 번		
성 명			생년월일			e-mail		
연락처	집			취 업 산업체	산업체명			
	휴대폰				근무부서			
	회사전화				소재지			
근무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복귀 사유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복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보호자 : (서명)								
첨부서류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담임교수	학부(과)장	취업진로 지원처장
확인			

	담 당	팀 장	부 처 장	처 장
교무처 결재				

백석문화대학교 총장 귀하